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⑧ -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서예, 그림, 학문이 뛰어난 인평대군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130호
· 지정년월일: 1992.6.5
· 시대: 1658년(효종 9)
· 소재지: 신북면 신평리 산 46-1
· 규모: 묘역 1천800여평
· 재료: 토분 및 석물
· 배향인물: 인평대군

묘역은 곡담이 둘러져 있고 묘비 1기, 상석 1기, 문인석 4기(소형2, 대형2), 향로석 1기, 망주석 1기, 장명등 1기가 배치되어 있다. 묘역북쪽 좌측에는 비석이 없는 귀부가 있어 또다른 비석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묘비에는 '유명조선국인평대군 겸 우위도총부도총관 증시충경공지묘 복천부부인오씨부좌'의 명문과 무술구월초삼일의 건립기문이 있다.
상석의 고석은 사면에 사자상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고 문인석, 장명 등의 재질은 대리석이다. 묘역은 묘전을 장대석으로 치장하였고 장명등은 안상문, 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원형의 호석을 두른 봉분은 직

경 550cm, 높이 175cm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묘역 우측 하단에는 제물을 진설할 때 사용하였던 판석이 놓여있고 마주하여 묘비의 귀부가 자리하고 있다.
문인석은 두 손으로 홀을 잡고 있는 모습이며 관복의 앞자락에는 운문이 조각되어 있다. 묘역 후면 우측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석물이 설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60여m 떨어진 하단 묘역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총고 325cm, 폭 115cm, 두께 35cm의 거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귀부와 이수는 사실적 표현의 정교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왕명을 받들어 이경석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오준이 썼으며 전액은 오정일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평대군 이요는 인조의 3남, 효종의 동생으로 자는 용함, 호는 송계이다. 서예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으며 학문도 깊어 제자 백가에 정통했다. 1630년(인조 8) 인평대군에 봉해지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는 부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했다.
1640년(인조 18) 볼모로 심양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고, 1650년(효종 1)부터 4차에 걸쳐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병자호란의 비분을 읊은 시가 전해온다. 저서로는 『송계집』 『연행록』 『산행록』 등이 있다. 묘역은 1천800여평으로 매우 광대한 편이다.(신도비문은 포천군지 참조)



자·유·기·고



이 중 히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장

쓴 소리를 아무나 받아들이나

이렇게 보리밥에 채소를 먹어 왔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니었지만 평소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던 권 정승의 입에는 이런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았다.
권 정승은 몇 손갈 뜨고 그는 만 수저를 놓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조반상이 나왔다. 권 정승은 배가 몹시 고통지던 깔깔한 보리밥을 도무지 먹지 수가 없어서 어제와 같이 몇 손갈 뜨다가 상을 물렸다.
퇴계 선생이 아니라면 버럭 불평이라도 하셨지만 상대가 워낙 평소애 존경해 오던 사람이라 음식이 아무리 입에 맞지 않아도 불평을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니 권 정승은 더 머물면서 퇴계 선생과 더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음식 때문에 더 목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예정을 앞당겨 상경하게 됐는데 권 정승을 떠나기에 앞서 퇴계 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게 되니 섭섭하오. 내가 퇴계 선생을 만난 기념으로 귀감이 될 말씀을 하나 해 주시오"라는 권 정승의 말에 퇴계 선생은 웃음을 머미고 "강촌에 묻혀 사는 사람이 감히 정승께 무슨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감

께서 모처럼 부탁하시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감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는데 제가 운송한 식사 대접을 못해 드려서 매우 송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감께 올린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하면 진수성찬입니다. 농민들이 먹는 음식은 강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가 고작이고 그나마도 없어서 굶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그 음식이 거칠다고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저는 이 나라의 정래가 몹시 걱정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과 백성이 동고동락해야 하는데 관과 민의 생활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어느 백성이 나라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계 선생의 이 말은 권 정승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당시로서는 퇴계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직언이었다.
"참으로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충언입니다. 나는 이번 행차에서 배운 바가 많이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큰 인물이 큰 인물을 알아본다

고 한다. 권 정승 역시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퇴계 선생의 쓴 소리를 거들 고마워했다.
그 후 한양으로 돌아온 권 정승은 가족들에게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자세히 전하는 동시에 그 날부터 일상 생활을 지극히 검소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정자 중에는 권 정승처럼 쓴 소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은 현 정부에 대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언과 직언을 했다.
그러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그것을 정치적 발언이라 매도했다. 그런데 그 비판은 이해찬 총리가 청년 시절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맞았던 역대 군사독재 정권들이 한 말에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 시절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정권들은 이런 김 추기경의 योग이 있는 발언에 대해 "종교 인사가 어찌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느냐"라며 매도했다.
그런데 그런 독재정권에 그토록 처절하게 맞섰던 이 총리가 지난 독재정권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하며 김 추기경의 쓴 소리를 거부하고 있다. 역시 쓴 소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보다. 국민은 불안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420여년 전의 일이다. 권을 장군의 아버지이자 백사 이항복의 처조부되시는 권철 대감은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항상 학식과 덕망이 높은 퇴계 이황 선생을 존경하고 받들었다.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내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퇴계 선생을 만나려고 권철 대감은 서울에서 500리가 넘는 경상북도 안동의 도산서원으로 내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퇴계 선생은 동구 밖까지 나가 예의를 갖추고 권철 대감을 영접했고 두 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몇 시간 동안 학문을 논했다.
그러나 그 날 저녁상을 받고 부터 문제가 생겼다. 권 정승과 퇴계 선생이 겸상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상에는 보리밥과 콩나물, 가지나물 등 채소뿐이었다. 그래서 그 날은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특별히 북어 무침이 하나 더 있었다. 퇴계 선생은 언제나 제자들과 같이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②

경찰의 '독자적인 1차' 수사권 보장절실

헌법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또한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한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또한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예컨대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서 사법경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의 징계·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행정처분까지 간섭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검사는 부법규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경찰의 피의자구속장소를 감찰하여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구속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직접 검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사체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으며 그 명에 의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보고를 받게 되면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안 또는 부검하도록 하게 하여 사인을 밝힌 다음 사법경찰관에게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지휘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시한 변사사건에 대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사체의 처리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변사체검사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단서의 영역에 불과한 부분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도한 수사권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의 사법경찰관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법무부령(1958년 4월 23일 자)에 의하면 '법무부관계직원의 관련사건이 발생시에는 시급히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각급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각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지휘권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는 제한에 더하여 법무부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봉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그 내용에 대한 진정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여 보장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판정에서의 모든 증거확보와 사법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이중수사로 인한 고통과 검찰업무의 과중 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을 부여받음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분배하는 법제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 법제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1차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에게 수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 독자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국가조직에 있어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문제화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검사는 프랑스·독일 등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소송절차의 정당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독일과 일본을 거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검찰제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16년 동안 한결 같은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2층 풍천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